

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‘통상조약 등’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·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¹⁾ 및 통상환경대응²⁾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제5호 및 제8조의3 신설).
-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, 특허권 등 보호, 정보 보호 관련 법률 준수, 공중도덕 보호, 금 또는 은의 안정적인 수급, 국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명시함(안 제5조).
-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무역장벽보고서 작성의무를 부여하고, 이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상대국과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도록 함(안 제7조제4항·제5항).

II. 검토의견

- 안 제8조의3제2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중소기업·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사업을 위해 관세청장에게

1) 통상조약 등 활용: 통상조약 등을 통하여 관세 감면, 판로 확대, 관세 외 각종 수입규제의 해소 등 경제적 혜택을 실현하는 것을 말함(안 제8조의3제1항).

2) 통상환경대응: 환경규제 강화, 지속가능한 공급망의 요구, 전자무역의 촉진 등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함(안 제8조의3제1항).

협정관세 활용 관련 통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해당 통계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(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이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).

대안	수정의견
제8조의3(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 등)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협정관세 활용 관련 통계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	제8조의3(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 등) ② ----- ----- - 관세청장에게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협정관세에 대한 통계(협정관세 적용 수출입액, 활용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를 말한다)의 제공을 ----- ----- ----- -..

-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박 혜 진)